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단체에 소속된 대안 공간들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이사장 김 ○ ○)

피신청인 : 아트 인 컬처

종 재 부 : 서울제5종재부

접 수 일 : 2006. 1. 31.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아트 인 컬처 :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원하는
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호 148면
~155면)

내 용 : (전략)

양조위 : 한동안 ‘대안공간 작가군’이라고 라벨을
붙이다시피해서는 대안공간들끼리 돌러가면서 전시하
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안공간 작가군’과
대안공간들간의 집단적 사랑의 시기가 끝나고, 대안

공간들이 기업에 러브콜을 던지는 시기가 왔나 봐요.
□□와 △△△△의 염문설에 이어, ▲은 신한은행과,
◇◇◇◇는 현대백화점이랑 뭔가를 모색 중이라면서
요? 뭐 잘되면 좋지요.

장동건 :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대안공간 네트워
크에 이런 규약이 있대요. “대안공간에서 전시를 한
작가는 1년 안에 ‘대공네트워크’에 소속된 다른 대안
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 없다.” 처음에는 이 규약이 말
뿐인 것 같아서 실제로 따져봤는데, 실제로도 그렇더
라고요. 물론 규약이 작동한 결과라기보다는 작가들
이 1년에 두 번이나 개인전을 여는 일 자체가 드물어
서 그렇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소위 ‘대안공
간 작가들’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떠나버린 마당에,
뒤늦게 합류한 젊은 작가들에게만 그런 규약을 들이
밀다니 불공정해요. 자기네들은 좋은 거 다 해놓고
말야. (중략)

하워드 스텐 : 전 대안공간들이 예전에 어르신들이
조직하곤 했던 친목단체 같은 집단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끼리끼리 놀고, 때 되면 그냥 모여서 전
시하고.

폴라 압들 : 할아버지 세대들의 ‘OO회’ 들은 회원
개념이라도 확실하죠. 그러니까 피아가 명확히 나뉘
잖아요. 헛갈리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대안공간 작가
군은 그 경계선도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게다가 전시

공간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금도 여기저기서 먼저 타 내니 더욱 문제지요. 이젠 완전히 압력단체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중략)

데이비드 핫셀호프 : 전시홍보물에 보면 ‘후원: (주) △△△△산업개발’ 이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그나저나, 갤러리는 작가 대접을 잘 해야죠. 오프닝에서 보니까 갤러리 측의 감독·지원이 부족한 덕분인지 작품 설치를 마치지 못한 작가도 있던군요. 화가 너무나 나머지 지옥불처럼 타오르던 모 작가의 눈빛.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류승범 : □□가 공적자금을 끌어다 쓰는 대안공간으로 남건, 상업화량으로 변신을 하건, 앞으로의 운영 목표와 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겁니다. (중략)

홍록기 : ▲의 고질적인 문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산 집행에 관련해 연간 결산 결과를 한 번도 공개해본 적이 없어요. 기금을 꽤 받은 해에도 대관전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꽤 후안무치했다고나 할까요. 기금사용 내역은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중략)

고현정 : ◇◇◇◇는 운영위원회제가 좀 흔들리면서 이상해졌어요. 윤○○ 전 이사장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균형이 안 맞는 달까요. 모 큐레이터의 사직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죠. 이사장의 이름이 분명히 입구 유리문에 붙어있었는데, 하나 떨어지는가 싶더니 이젠 싹 사라지고 없어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1월호 라운드 테이블면에 『불타는 라운드 테이블 :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원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대안 공간 네트워크(사단법인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에 이런 규약이 있대요. ‘대안 공간에서 전시를 한 작가는 1년 안에 대공네트

워크에 소속된 다른 대안 공간에서 전시할 수 없다’(후략)”라고 적시하고 “대안 공간들이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던지는 시기가 왔나 봐요. (중략) 대안 공간 ‘▲’ 이 신한은행과 (후략)”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안 공간 네트워크에는 보도에서 언급된 규약이란 것 자체가 없고 정관에도 작가의 전시를 제약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안 공간 ‘▲’ 은 신한은행과 일체의 지원 요청이나 후원에 대한 활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1월호 라운드 테이블면에 『불타는 라운드 테이블 :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원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대안 공간들이 ‘끼리끼리’ 모여 활동하고 압력단체화 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적시하고 대안 공간 네트워크 소속 □□가 제대로 감독 지원을 하지 못해 모 작가의 작품 설치가 정상적으로 끝나지 못했으며 □□가 상업 갤러리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안 공간 ‘▲’의 기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예산 사용에 의심이 간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대안 공간 ‘프로젝트스페이스 ◇◇◇◇다방’의 현관문에 붙어 있던 이사진 명단이 별다른 설명 없이 철거돼 의문이며 ‘프로젝트스페이스 ◇◇◇◇다방’의 전 이사장에게 집중된 힘의 불균형에서 운영위원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큐레이터 사직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발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안 공간 네트워크 측은 국내 대안 공간들이 공적 기금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양산하는 압력단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대안 공간 ‘□□’에서 있었던 모 작가의 작품 설치 실패 사건은

작가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고 '□□'가 상업 갤러리를 지향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대안 공간 '▲'은 법인으로서의 회계기준에 맞춰 세무사로부터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안 공간 '프로젝트스페이스 ◇◇◇다방'의 현관문에 붙어 있던 이사진 명단은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물 주인에 의해 철거된 것이며 '프로젝트스페이스 ◇◇◇다방'의 전 이사장에게 힘이 집중됐다는 보도는 오보이며 운영위원 제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권고 사직된 큐레이터의 경우는 해당 큐레이터의 중대 과오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잡지는 지난 2006년 1월호 라운드테이블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원한다』라는 기사 중 사단법인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대안공간 네트워크)와 그 회원에 관한 내용에서, 익명 대담자의 발언 형식을 빌어, 첫째 대안공간 네트워크는, 대안공간에서 전시한 작가의 1년 이내 재전시를 제한하는 규약이 있으며, 기금을 위한 압력단체로 변하는 것 같고, 둘째 대안공간 □□는, 갤러리 전시중 감독 지원 부족으로 작가가 작품설치를 마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상업화랑으로 진화하는 것 같고, 셋째 대안공간 ▲은, 후원을 받기위해 신한은행과 뭔가를 모색 중이며, 예산집행과 관련해 연간 결산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고, 넷째 ◇◇◇다방은, 운영위원제도가 흔들리면서 윤○○ 전 이사장의 힘이 너무 강력해 균형을 잃었고, 모 큐레이터 사직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으며, 입구 유리문에 붙어있던 이

사진의 명단도 사라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첫째 대안공간 네트워크는, 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관에도 작가의 전시를 1년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는 대안공간 네트워크로 활동하다가 2005. 10.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대안적으로 공공의 이념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고, 둘째 대안공간 □□는, 갤러리 전시에서 감독지원 소홀로 작가의 작품설치에 지장을 준 경우가 없으며, 지금까지 비영리 갤러리로서 상업행위를 한 적이 없고, 셋째 대안공간 ▲은, 전문예술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기금을 집행해 왔고, 기획대관은 이미 폐지되었으며, 신한은행은 주거래 은행일 뿐, 넷째 신한은행에 대한 지원요청이나 후원을 위한 활동을 한 적이 없고, ◇◇◇다방은, 어느 한 사람이 전횡할 수 없게 공동운영위원회로 운영되어 왔고, 윤○○ 전 이사장도 내규에 따라 성실히 소임을 다하고 퇴임하였으며, 모 큐레이터의 사직은 공식적 절차를 거친 징계조치에 따른 것이고, 이사진의 명단 철거는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아트 인 컬처 “라운드 테이블”(원탁좌담) 우측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보도의 제목(“불타는 라운드 테이블”)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2006년 3월호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트 인 컬처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호 16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부처가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책 광고에 부당하게 간섭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정홍보처 (처장 김 창 호)

피신청인 : 경기일보

증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경기일보 : 『국정홍보처의 ‘정책광고’ 간섭, 부당하다』
제하의 사설 (2006년 1월 26일자 19면)

내 용 : (전략)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유료 정책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내용과 시기·예산·매체 운용계획 등을 국정홍보처와 협의토록 한 것은 (중략)

협의 과정에서 개별 매체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TV·신문·라디오·잡지·인터넷 등 홍보 매체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중략)

하지만 광고배정 ‘창구’를 홍보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홍보처의 ‘입맛’에 따라 광고가 배정될 것은 불문가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1월 26일자 19면 『국정홍보처의 ‘정책광고’ 간섭, 부당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유료 정책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시기·내용·예산·매체운용계획 등을 국정홍보처와 협의토록 했다”

고 적시하고 “TV·라디오·신문·잡지·인터넷 등 홍보 매체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하며 “광고배정 ‘창구’를 국정홍보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공동명의로 광고를 시행할 경우에 내용·시기·예산·매체운용계획 등을 국정홍보처와 협의하는 것이며 산하기관 독자 광고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홍보매체 선택시 TV·신문·인터넷·잡지·라디오 중 어느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매체가 효율적인지 협의를 한다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며 광고배정 역시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창구를 국정홍보처로 일원화 한 것은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제 목 : 정정보도

•내 용 : 본보 1월 26일자 『국정홍보처의 정책광고 간섭, 부당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광고배정 창구를 홍보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광고배정은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써, 창구를 홍보처로 일원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유료 정책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내용과 시기·예산·매체운용계획 등을 국정홍보처와 협의토록 했다’는 부분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공동명의로 광고를 시행하려면’으로 바로잡습니다. 산하기관이 독자적으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TV·신문·라디오·잡지·인터넷 등 홍보매체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기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협의를 해야 한다’로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일보에 합의 후 7일 이내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20급으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의 식당이 주택용도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며 밤 늦도록 영업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3.

처리결과 : 합 의(정정)

취 하(손배)

보도내용

한겨레 : 『주택 용도 건물서 버젓이 술장사』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24일자 호남지역 배포판 14면)

내 용 : 전남 여수시 소호동 김아무개(54)씨 등 주민 27명은 23일 “주택가에 들어선 ㄷ식당이 주택 용도의

건물을 식당으로 둔갑시켜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ㄷ식당은 2000년 5월 여수시 소호동 기존 건물 1층 식당(29평) 옆에 10평 규모의 목조건물을 신축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했다. 기존 건물은 전통 찻집으로 운영하고, 새 목조건물은 서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ㄷ식당은 2000년 9월까지 주택 용도의 건물을 식당으로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략)

주민들은 “ㄷ식당이 주택가에 일반음식점(식당)으로 허가를 받아 술집과 식당을 겸업하면서, 새벽 2~3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며 “목조건물의 심야영업 때문에 주차난과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ㄷ식당은 식사를 취급하면서 부분적으로 술을 곁들여 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24일자 호남판 14면 『주택 용도 건물서 버젓이 술장사』 제하의 기사에서 ㄷ식당이 주택 용도의 건물을 식당으로 둔갑시켜 술집과 식당을 겸업하면서 새벽 2~3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주차난과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ㄷ식당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 근린주택 2종지 건물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간단한 주류와 식사를 제공하는 건전한 업소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트식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년 1월 24일자 호남판 “주택가에서 버젓이 술장사”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트식당>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하여 왔으며, 심야에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2월 2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고 호남지역에 배포되는 한겨레 13면 또는 14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중간 제목 ‘여수 소호동 주민 집단민원’과 동일한 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박스 기사로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 신청을 취하하고, 피신청인은 이후 신청인의 동의 없이 <트식당>과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트식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8일자 호남지역 배포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부처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70
 청구명 : 정정청구
 신청인 : 과학기술부 (장관 김 우 식)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재부 : 서울제6중재부
 접수일 : 2006. 2. 24.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1) 『9개국 공동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과기부 “참여 포기”』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3일자 1면)

내 용 : 미국이 이달 들어 원자력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키로 한 ‘원자력 독과점 체제’ (범 카르텔)에서 한국이 빠지게 생겼다. 우리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미·일본·프랑스 등 9개국이 지난해 서명한 ‘차세대 원자로(GenIV) 개발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는 14~16일 일본 후쿠이현에서 열리는 ‘나트륨 냉각 고속원자로(SFR) 개발 프로젝트’ 서명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후략)

(2) 『과기부, 차세대 원자로 추후 서명 약속도 안해, 한국, 사업 참여 사실상 물 건너가』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4일자 2면)

과학기술부는 14~16일 일본 후쿠이현에서 열리는 차세대 원자로(GenIV) 개발 서명식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할 때 추후 서명할지도 모른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가 이 약속을 이번 서명식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SFR)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과기부는 10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지시해 과기부 원자력국장과 함께 ‘GenIV사업’의 한국 공동대표인 원자력연구소 장문호 박사 명의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에 ‘서명식 불참’을 알리는 e-메일을 보

냈다. 여기에는 ‘불참하겠다’는 문구만 들어있을 뿐 나중에 언제 서명하겠다는 일정 등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에 정통한 전문가는 이를 ‘앞으로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13일자 1면 『9개국 공동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과기부 “참여 포기”』 제하의 기사와 2월 14일 2면 『과기부, 차세대 원자로 추후 서명 약속도 안 해… 한국, 사업참여 사실상 물 건너가』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 정부가 ‘차세대원자로(GenⅣ)’ 개발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하고 “우리 정부가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개발 프로젝트에 서명하지 않기로 했으며 ‘차세대 원자로(GenⅣ)’ 개발 서명식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할 때 추후 서명할지도 모른다는 약속을 하지 않아 나트륨 냉각 고속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차세대 원자로(GenⅣ)’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해 활동하고 있으며 나트륨 냉각 고속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서명하지 않기로 한다고 한 것은 금번 일본 후쿠이에서 있는 Gen-Ⅳ 국제포럼 정책그룹회의의 나트륨 냉각 고속로 시스템 약정 서명식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이는 참여 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며 나트륨냉각고속로 시스템 약정 추후 가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과학기술부는 2월 13일자 1면 『9개국 공동 차세대 원자로개발 과기부 참여포기』, 2월 14일자 2면 『과기부, 차세대 원자로 추후 서명 약속도 안 해… 한국, 사업참여 사실상 물 건너가』 보도와 관련, 차세대 원자로 개발 6개 시스템 중 하나인 나트륨냉각고속로(SFR)와 관련된 시스템 약정 서명식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고, 나트륨냉각고속로를 포함한 차세대원자로개발계획 참여포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추후 참여 결정시 서명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3월 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제목은 고딕체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탈북자 구호 활동을 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7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4

처리결과 : 합 의(정정)

취 하(손배)

보도내용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2006년 1월 21일 22:55)

내 용 : (전략)

▷기자 : “임씨 씨는 모 탈북자인권단체 보호국장입니다. 우리는 그가 진실로 중국의 탈북자들을 구원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탈북자 한OO(본명 김OO) 인터뷰〉

▷기자 : “한OO 씨는 지금도 그때 당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폐철을 모집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자 : “한OO 씨는 임씨에게 동생을 데려다 달라고 1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북송되었고 사망했습니다. 임씨는 그런데도 한OO에게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고발하자 김△△ 변호사의 중개로 500만 원은 돌려받고 200만 원은 손실처리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 “원래 한OO 씨 여동생은 중국에 잠깐 와 한국에 간 오빠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김□□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모 탈북자인권단체 사무처장 송OO 목사 인터뷰〉

▷기자 : “임씨는 본부로부터 탈북자구출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원을 받았고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로부터도 돈을 받았습니다.” (중략)

▷기자 :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이 임씨의 말을 믿고 친인척을 탈중국시켜 달라고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중략)

▷기자 : “임씨의 일을 했다는 조선족 브로커는 탈북자 한명당 70-100만 원을 받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탈북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삿

속으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인터뷰〉

▷기자 : “이 탈북자는 스스로 북경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는데 100달러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탈북자들이 탈중국에 드는 비용은 그렇게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성탈북자 이OO (본명 김▲▲) 인터뷰〉

▷기자 : “임씨는 이OO 씨의 언니를 구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되었고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임씨는 돈도 돌려주지 않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임OO이 구출해준 남자 탈북자 인터뷰〉

“임씨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2006년 1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탈북 인권 단체의 희생자였다”는 제목으로 탈북자인권단체 간부인 임모 씨가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악용해 단체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탈북자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임모 씨는 중국에 나와있는 탈북자를 돕는 과정에서 자금횡령이나 사기, 폭력을 행한 적이 없으며 사고로 인한 보상을 하지 않은 사실도 없고 약 1,000여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왔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지난 1월 21일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우리는 탈북인권단체의 희생자였다” 방송에 대한 모 탈북자인권단체 전 간부 임OO 씨의 반론보도문입니다.

방송에서 임씨가 중국의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북한 주민을 강압적으로 탈북시켰으며,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OO 씨는 많은 애로를 극복하면서 1,000여 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2006년 3월 11일자 프로그램 말미에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은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여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2006년 3월 11일 23: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서울시가 건교부와의 합의를 깨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시장 이명박)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신문 : (1)『서울시·건교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강남 집값 또 들쭉』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5일자 1면)

내 용 :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헛갈리는 주택정책으로 연초부터 서울 강남 집값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7일 가격 불안정 조짐을 보이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동보조를 약속했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지 않고 현안 사항이 일어날 때마다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용적률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상정하는 등 모처럼만에 한 목소리를 냈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한달도 지나지 않아 깨졌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담은 재건축 기본계획을 마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재건축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건교부도 서울시가 여러차례 송파 신도시 개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 놓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송파 신도시 개발 계획안을 확정지었다.

이에 반발한 서울시는 4일 공식적으로 송파 신도시 개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강남·북 균형개발을 막고 투기 바람만 불러오고 있다는 이유를 달고 있지

만, 건교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불만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강북 뉴타운사업의 빛이 바랄 것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2) 『대책완비돼 적기 용적률완화 왜 지금하나 선거용 선심행정』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5일자 3면) 서울시가 강남구 은마아파트 용적률을 상향조정키로 하면서 서울시내 재건축 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8·31부동산대책'에 묶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쟁점을 정리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서울신문은 지난 2006년 1월 5일자 1면에 『서울시·건교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강남 집값 또 들쭉』이란 제목으로, 건교부와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지 않고 현안 사항이 일어날 때 마다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달이 지나지 않아 이 약속은 깨졌으며, 서울시는 지난 3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담은 재건축 기본계획을 마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키로 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재건축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고 보도했으며, 같은 신문 3면에는 『용적률 완화 왜 지금하나, 선거용 선심행정』이란 제목으로 용적률 완화로 인하여 서울시내 재건축 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건교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합의한 사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300% 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하여 평균 15층 이하로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추진하되, 평균층수 20층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노력하기로 한 것이며, 서울시에서 작성하여 공람 공고한 재건축 기본계획의 계획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기존 2종 12층 및 3종지역)의 경우 210%로 계획하였으나, 공람공고 및 서울시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기존 2종 12층 지역에서 3종으로 변경된 지역과 기존 3종 지역의 계획 용적률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기반시설이 양호한 기존 3종 지역의 경우 계획 용적률을 230%로 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항으로, 재건축 기본계획상 3종 일반주거지역의 계획 용적률을 210%로 하든 230%로 하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250%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건교부와 합의 사항을 깬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서울시가 건교부와 합의한 용적률 완화 불허 약속을 어기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줌으로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재건축 기본계획과 관련이 없는 지방선거를 연계시켜 선거용 선심행정이라는 과장 보도를 하였기에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보도문
- 제목 : 바로잡습니다
- 본문 : 서울신문은 1월 5일자 1면 『서울시·건교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강남 집값 또 들쭉』이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건교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사항은 ① 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250%, 3종 주거지

역은 250%→300%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개정과
② 2중 주거지역의 층수를 평균 20층 수준으로 완화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건교부와 합의를 깨고 3중 주거지
역 내 강남권 10개 단지의 용적률을 230%로 상향조
정하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서울신문 2006년 3월 11일
자 1단 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1일자 1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언론인 주택조합 모집 책임자로 나서 동료 직원들을 가입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0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지5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3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시사저널 : 『기자들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으니...』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8일자 40~42면)

내 용 : (전략)

기자가 이 사건을 입체 추적한 결과 김○○ 씨가 주
도한 한남동 주택조합 사기 피해 조합원 가운데 언론
인은 중앙 일간지와 방송사 등에 소속된 기자·PD·
아나운서 등 51명이었다. 그 가운데 모 방송사의 기
자·아나운서·PD가 17명으로 가장 많다. 조합원 모
집 책임은 모 방송사 박 아무개 아나운서가 맡았다.
박씨는 당시 모집책이 되어 주로 후배 기자와 PD 등
에게 조합가입을 권유했는데, 그의 권유로 조합원이
된 이들은 그동안 김○○ 씨의 사기 행각을 눈치채지
못한 채 적게는 2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3천여 만
원에 이르기까지 조합 분담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다.

그러나 정작 언론 분야 모집 총책임 박 아나운서
는 지금까지 조합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가 낸 돈은 조합 운영비 3백 90
만 원이 전부. 초기부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조합이었지만 그나마 조합원 자격조차 가질 수 없
었던 박씨가 사실상 특혜를 받은 것이다. 현재 주택
조합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박 아나운서는 그
동안 주요 조합 행사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중요한
조합 관련 서류에 자기 직인을 찍음으로서 책임자
역할을 해왔다.

자기는 조합 분담금 한 푼 안 내고 후배 직원들에
게는 돈을 밀어넣게 한 뒤 지금까지 조합비상대책위
원을 맡은 데 대해 박 아나운서는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자까지 쳐서 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
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래 언론인
조합 대표였던 같은 회사 이 아무개 PD로부터 부탁
받고 후배들을 조합원에 끌어들이었는데 그가 외환위기
당시 명예퇴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언론인 대
표를 물려받았다고 밝혔다. (중략)

김○○ 씨와 오○○ 씨가 주도한 주택조합원 모집 과
정에서 일부 모집 대표들은 자금 지원까지 받았다고

한다. 한남동 주택조합장 오OO 씨는 “언론과 국방부 모집책에게 용역비로 2억 원 정도 지급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김OO 씨를 구속한 뒤 오OO 조합장을 업무 방해 따위 혐의로 기소한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초 한남동 주택조합 사업이 김OO 씨의 사기극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박 아나운서의 권유에 따라 조합원이 된 일부 모 방송사 기자들은 지난해 들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28일자 제857호 40~42면 『기자들도 감쪽같이 속아넘어갔으니...』 제하의 기사에서 한남동 주택조합 사건과 관련해 모 방송사 박 모 아나운서가 당시 한남동 언론인 주택조합 모집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동료 직원들의 가입을 적극 권유했으며 한남동 연합 주택 조합장 오모 씨가 “언론과 국방부 모집책에게 용역비로 2억 원 정도 지급했다”고 언급하면서 마치 박 모 아나운서가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당시 주택조합 언론인 모집 책임자는 박 모 아나운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주택조합에 가입한 박 모 아나운서의 동료들은 박 모 아나운서의 권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에 의해 조합에 가입했던 것이며 연합주택조합장 오모 씨가 언급한 2억 원은 언론과 국방부 모집책이 아닌 주택조합원 모집 전문 용역회사인 (주)OO시티에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1일자 제857호에서, 한남동주택조합 사기피해자들 중 모 방송사 조합원 17명의 모집책을 모 방송사 박 아나운서가 맡았는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일부 모집 대표들은 자금지원까지 받았고, 연합주택조합장이 “언론 분야와 국방부 분야 모집책에게 용역비로 2억 원 정도 지급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 아나운서는 당시 언론 분야 조합원 모집책은 자신이 아니었고, 연합주택조합장이 말했다는 용역비 2억 원은 조합원모집 용역회사인 (주)OO시티에 지급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시사저널 5월 1일자까지 판권표시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크기로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저널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일자 8면)

내 용 : 지난 3월 21일자 제857호 ‘한남동주택조합 사기피해’ 기사에서 모 방송사 조합원 17명 모집책을 모 방송사 박 아무개씨가 맡았는데,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일부 조합대표는 자금지원을 받았고, 연합주택조합장이 “언론과 국방부 분야 모집책에게 용역비로 2억 원 정도 지급했다”고 말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당시 언론 분야 모집책은 자신이 아니었고, 연합주택조합장이 거론한 용역비 2억 원은 조합원 모집 용역회사인 (주)OO시티에 지급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